

인천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8가합58805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김문주, 김창혁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성훈

변론 종결2019. 12. 20.

판결 선고2020. 1.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3,744,7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토목, 건축 포장,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토지의 취득, 개발 및 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도급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아래 표 공사명란 기재 각 공사(이하 표 순번 1 공사는 '경남혁신', 표 순번 2 공사는 '포항장량', 표 순번 3 공사는 '수원호매실', 표 순번 4 공사는 '화성동탄'이라 하고, 위 공사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각 공사를 시공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는 이 사건 각 공사에 따라 건설되는 아파트(이하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하고, 공사별로 특정할 경우 앞서 약칭한 공사명에 아파트를 붙여 기재한다)에 대한 발코니 확장공사(이하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라 한다) 용역을 제공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실제 이 사건 각 아파트 중 발코니 확장공사가 실시된 세대의 비율은 아래 표 발코니 확장세대 비율란 기재와 같다.

1	경남혁신도시 B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2011. 9. 16.	65,653,465,000 (변경후: 70,646,848,000)	2013. 11. 13.	97.7%(= 725/742 세대)
2	포항장량 C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	2011. 10. 11.	43,055,583,000 (변경후: 44,704,891,000)	2013. 10. 9.	91.5%(= 454/496 세대)
3	수원호매실 D 아파트 건설공사 12공구	2014. 8. 27.	41,207,005,000 (변경후: 41,432,927,000)	2016. 11. 26.	100%
4	화성동탄 E 아파트 건설공사 11공구 및 F중학교 신축공사	2016. 12. 28.	90,765,557,104 (변경후: 94,520,286,000)	진행중	100%

2) 이 사건 각 공사는 모두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소정의 국민주택인 이 사건 각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공사로서, 위 공사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각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 또한 위 조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 각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분에 대한 매출세액은 원고에게 납부의무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는 대신, 원고가 이

부분에 지출한 재료비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지 못하는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이를 공사대금에 포함하여 지급함으로써 보전해주고, 일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분에 대한 매출세액은 피고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가 이 사건 각 도급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것이 예정된 매입세액 보전액을 포함한 공사대금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분의 공사대금 중 매입세액 보전액의 비율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경남혁신	69,208,826,000	20,396,228	69,004,863,720	3,150,793,120	4.566%
포항장량	44,704,891,000	28,917,545	44,415,715,550	1,866,546,357	4.202%
수원호매실	41,432,927,000	15,951,261	41,273,414,390	1,613,102,423	3.908%
화성동탄	94,520,286,000	982,415,087	84,696,135,130	2,676,028,964	3.160%

다. 원고의 부가가치세 납부

1) 남인천세무서는 2018. 4. 23. 원고에게 '2013년 1기부터 2017년 2기까지 피고와 사이에 발생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 공급가액 21,296,942,000원에 대하여,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피고로부터 도급을 받은 시공사인 원고가 발코니 확장용역을 제공하고 면세용역으로 분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누락한 혐의가 있어 안내하니 부가가치세 등을 누락하였거나 과세용역을 면세용역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납부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 해명안내(이하 '과세자료 해명안내'라 한다)를 발송하였고, 그 무렵 과세자료 해명안내는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8. 6. 25. 2013년 1기부터 2017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대상 공급가액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수정신고를 하고, 같은 날 합계 184,230,940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라.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2,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알았다면 이 사건 각 도급계약상 공사대금에 위 용역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포함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남인천세무서로부터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받고,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그 결과 피고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서 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함에도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지급의무를 면하는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143,744,70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2호, 제3조 제1호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으므로, 그 거래 상대방인 공급을 받는 자는 이른바 재정학상의 담세자에 불과하고 조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같은 법 제31조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사업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을 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를 선언한 것으로, 그 규정이 있다 하여 공급을 받는 자가 거래의 상대방이나 국가에 대하여 직접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0677, 4068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용역의 공급자로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인 원고 자신의 납세의무에 기한 것일 뿐, 이로 인하여 조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피고가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의무를 면하는 이득을 얻었다거나, 또는 원고가 전혀 납부의무가 없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부가가치세 납부로 인하여 피고가 부당이득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하수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역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란 주거전용면적이 1세대당 85㎡ 이하 규모의 주택을 말한다.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2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주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제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에 주의적으로 규정된 구체적 재화나 용역의 유형을 참고하되, 궁극적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거래내용, 생산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29895 판결 참조).

그리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 및 위 각 증거,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포함된다거나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국민주택인 이 사건 각 아파트 건설공사에 통상적으로 내지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아파트 건설공사 용역과 독립된 별개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아파트 건설공사와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를 하나의 계약인 이 사건 각 도급계약에 따라 도급받았으며, 공사대금도 일괄적으로 정하여 지급받았다고 하여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1) 발코니 구조변경은 2005. 12. 2.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합법화되었는데, 이는 입주자의 편의와 주거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인 발코니 중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를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발코니 확장공사는 수분양자의 선택에 따라 피고가 시공사인 원고에게 도급을 주어 이루어지는 것일 뿐 국민주택 공급 시 반드시 발코니를 확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주택 공급 후에도 발코니 확장이 별개의 용역으로 공급될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공급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거나 아파트 건설용역과 물리적으로 분리 불가능한 하나의 건설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발코니는 주택법상 공동주택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주거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고,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2005. 12. 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400호로 제정된 것, 이하 같다) 제9조는 건축물대장을 작성함에 있어 발코니 구조변경으로 인한 주거전용면적은 주택법령에 따라 당초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발코니 구조변경이 있더라도 당초 국민주택규모 부분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 변함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피고의 주장과 같이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포함한다고 해석한다면, 확장된 발코니 부분의 면적을 주거전용면적에서 제외한 위와 같은 규정들과 상충되는 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확장된 발코니 부분의 면적까지 고려할 경우 주택법상 국민주택으로 인정되는 면적을 초과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오히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국민주택 내지 그

건설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취지에 반하게 될 우려가 존재한다.

(3) 위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들도 제정 또는 개정되었는데, ①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7조는 사업주체가 발코니 등 구조변경을 하는 경우 주택공급 승인 신청을 함에 있어 분양가와 별도로 발코니 등 구조변경에 따른 비용을 제출하도록 하였고, ②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2015. 12. 29. 국토해양부령 제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4조, 제7조에서도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하여 입주자에게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으로 '발코니 확장'을 규정하면서, 사업주체가 발코니 확장을 추가선택품목으로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에 그에 따른 비용을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처럼 주택법, 건축법 시행령,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에서 발코니 구조변경을 주택의 공급과 별도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4) 또한 국민주택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는 건축법 시행령이 발코니 구조변경을 합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되기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규정이므로, 위 규정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공급을 넘어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까지 면제대상으로 하려는 취지라고 보기 어렵다.

(5) 피고는 이 사건 각 아파트에 대한 분양공고를 하면서 이 사건 각 아파트의 분양가격과 별도로 발코니 확장비용을 표시하였고, 분양계약서에도 마찬가지로 분양가격과 발코니 확장비용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경남혁신, 포항장량 아파트의 경우 처음부터 피고가 발코니 확장형과 비확장형을 나누어 공급하였고, 이 사건 수원호매실, 화성동탄 아파트의 경우 수분양자들이 발코니 확장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다.

(6) 피고의 이 사건 각 아파트 수분양자에 대한 발코니 확장 공급은 국민주택인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공급에 통상적 또는 필수적으로 부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면세재화인 이 사건 국민주택의 공급과 별개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48617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두4003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은 피고가 수분양자들과 체결한 이 사건 각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체결한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의 수분양자에 대한 발코니 확장 공급이 과세대상임에도 원고의 피고에 대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면세대상으로 볼 경우 누적효과¹⁾에 의해 수분양자(최종 소비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증가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이 이 사건 각 아파트 건설용역과 별개의 과세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의 수분양자들에 대한 발코니 확장용역 공급과 통일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7)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도급계약에서 이 사건 각 아파트 건설공사 부분과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 부분의 공사대금을 구분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포함된다고 한다면,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계약 당사자들의 의사나 선택에 좌우되도록 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분양공고를 하면서 이 사건 각 아파트의 분양가격과 별도로 발코니 확장비용을 표시한 사정 등에 의하면 하나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단일한 계약금액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전체 공사대금에서 발코니 확장 공사대금을 정산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각각의 공급가액을 구분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8) 한편, 피고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반면,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은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그 부수용역 여부의 판단기준이 '필수적으로'에서 '통상적으로'로 변경되었으므로, 적어도 현행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된 2013. 7. 1. 이후인 2013년 2기분부터의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에 대해서는 그 기준을 완화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1호의 내용을 그대로 법률에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그 판단기준을 달리 한다고는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가 분양하는 아파트의 수분양자들 대부분이 발코니 확장을 선택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이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건설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하는 용역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2)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의 보충적 해석에 따른 부가가치세 지급채무의 발생여부 가)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가 있고 그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당사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을 때에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할 수 있는바, 여기서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는 당사자의 실제 의사 또는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계약의 목적, 거래 관행, 적용법규, 신의칙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다1328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각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 또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 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 부분에 지출한 재료비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지 못하는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이를 보전해주기로 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분에 대하여는 그 부분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각 공사 중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 부분에 대한 매출세액은 원고에게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공사대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대신 그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사대금에 포함시켜 이를 보전해주기로 하였으나, 만일 이 사건 각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 부분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그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공사대금을 산정함과 동시에 그 부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 보전액을 공사대금에서 제외시켰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의 보충적 해석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에서 그 부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 보전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부가가치세 지급채무의 범위 가) 살피건대, 앞서 본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의 체결 경위와 목적, 공사대금의 구성, 거래관행, 신의칙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쌍방의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를 고려할 때,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이 사건 각 아파트별로 일반 분양가액에

발코니 확장을 선택한 수분양자로부터 받은 발코니 확장금액을 더한 총 분양가액에서 위 발코니 확장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고, 위 비율을 원고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별로 기존에 신고하였던 부가가치세 면제 부분 공급가액에 곱하여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을 구한 다음 여기에 부가가치세율 10%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정하고, 위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매입세액 보전액은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에 이 사건 각 도급계약상 부가가치세 면제 부분의 공급가액 중 피고가 지급한 매입세액 보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나)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산정된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합계 237,914,784원2) (= 경남혁신 48,870,721원 + 포항장량 55,595,813원 + 수원호매실 84,554,774원 + 화성동탄 48,893,476원)이 되고, 이 사건 각 공사별 구체적인 부가가치세액 내역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은 사실, 나아가 위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매입세액 보전액은 합계 94,170,074원(= 경남혁신 22,314,371원 + 포항장량 23,361,360원 + 수원호매실 33,044,005원 + 화성동탄 15,450,338원)이 되며, 이 사건 각 공사별 매입세액 보전액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경남 혁신	8,9 89, 477	13, 00 5,1 04	15, 17 9,0 18	6, 85 7, 07 9	4,8 40, 04 3															48, 87 0,7 21
포 항 장 량					23, 12 8,1 45	10, 52 6,2 80	20, 71 4,0 92	1, 22 7, 29 6												55, 59 5,8 13
수 원 호 매 실									2, 48 9, 25 4	2, 23 7, 74 2	11, 29 0,4 12	10, 49 1,5 06	18, 44 7,2 01	7, 14 3, 76 5	15, 37 0,0 88	8,6 82, 96 6	3,6 34, 74 6	4, 76 7, 09 2		84, 55 4,7 74
화 성															10, 39 7,9 62	13, 76 7,0 42	24, 72 8,4 71			

경남혁신	8,989,477	13,005,104	15,179,018	6,857,079	4,840,043															48,870,721
동탄																				
각 공사 부가세액의 총합계	237,914,784																			

경남혁신	48,870,721원	488,707,210원	4.566%	22,314,371원
포항장량	55,595,813원	555,958,130원	4.202%	23,361,360원
수원호매실	84,554,774원	845,547,740원	3.908%	33,044,005원
화성동탄	48,893,476원	488,934,760원	3.160%	15,450,338원
합계	237,914,784원			94,170,074원

4) 소결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43,744,708원(=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합계 237,914,784원 - 위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될 매입세액 보전액 합계 94,170,076원4))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감축 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공사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의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하여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고, 그 기산일은 각 기성금 청구 시점인데, 위 공사대금채권 중 원고의 이 사건 소장 접수일인 2018. 8. 9.부터 3년 이전인 2015. 8. 8. 이전에 발생한 경남혁신, 포항장량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부 및 수원호매실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한 2015년 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공사대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3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가) 소멸시효 기간

민법 제163조 제3호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으로 들고 있는 '도급을 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서 그 '채권'에는 도급받은 공사의 공사대금채권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되고, 당사자가 공사에 관한 채권을 약정에 기한 채권이라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의 성질이 변경되지 않은 이상,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제163조 제3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718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액수에 비례하여 정해지는데다가 통상 공사도급계약에 있어 도급약정과 부가가치세 부담약정은 하나의 계약으로 체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구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공사대금채권은 이 사건 각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으로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소멸시효 기산일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 및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도급계약에서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의사는 '원고가 실제로 납부하게 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피고가 부담한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실제 관할 세무서의 과세자료 해명안내 또는 부과처분 있기 전까지는 원고와 피고 모두 발코니 확장공사 부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내야할지 여부나 그 액수를 예상할 수 없어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관련 공사대금채권 역시 그 발생 여부나 액수를 확정할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는 위 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 건설에 필수적 또는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여 면제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각 도급계약 체결 당시에 위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착오가 있었고, 경남혁신, 포항장량, 수원호매실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할 무렵에는 이에 대한 판례도 존재하지 않았으며(과세관청이 시행사를 상대로 발코니 확장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발코니 확장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아파트의 공급에 거래의 관행상 통상적으로 부수되거나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위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2014두40036 판결도 위 각 도급계약 체결 이후인 2014. 12. 11.에 비로소 선고되었고, 경남혁신, 포항장량은 위 판결 선고 이전에 준공까지 마쳐졌다), 달리 원고와 피고가 위 도급계약들을 체결할 당시 이와 같은 착오에 빠진 것에 대해 과실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만약 원고가 처음부터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 청구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은 명백해 보이는 점, ④ 실제 원고가 부과처분이 내려지는 등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될 상황에 처하지 않았다면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므로, 이를 두고 단순히 권리를 행사함이 사실상 곤란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한편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까지 청구하는 것은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의 보충적 해석에도 어긋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에 대하여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받는 등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 내지 예견할 수 있음을 조건으로 하거나 위 시점을 불확정 기한으로 하여,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사대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받기 전까지 조건 미성취 또는 불확정 기한 미도래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사유가 있었으므로,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받아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도래하여 공사대금 채권의 존재 및 액수가 확정되어 원고가 부가가치세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각 기성금 청구 가능 시점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공사대금채권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본다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시기'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원고로서는 공사대금 일부를 청구도 하지 못한 채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어 부당하다.

다) 소결론

과세자료 해명안내가 원고에게 2018. 4. 23.경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도과하기 전인 2018. 8. 9.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위원중

판사김동욱

판사조소희

별지

1) 전체 거래단계 중 중간단계를 면세하고 최종단계를 과세할 경우, 면세사업자로서는 전단계에서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므로 이를 매입원가로 하여 물건 값에 포함시켜 공급하고, 다음 단계의 과세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 없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위 공급금액을 매입원가로 하여 물건 값에 그대로 포함시켜 공급하면서 다시 그 전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함으로써 최종소비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증가하는 결과가 되는데, 이와 같이 거래단계 전체적으로 창출된 부가가치보다 더 많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효과를 누적효과라 한다.

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3) 기초사실 나의 3)항 표의 매입세액비율과 동일하다.

4) 위 매입세액 보전액의 합계액은 94,170,074원이나 원고가 94,170,076원이 공제되어야 함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다.